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. 11 선고 2022가단52440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삼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1. 11.

주 문

1.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2021. 5. 25. 체결된 증여 계약을 207,511,4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. 5. 25. 체결된 증여 계약을 18,864,6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원고에게, 피고 B는 207,511,444원, 피고 C은 18,864,6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반정우

별지